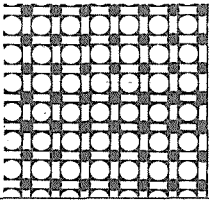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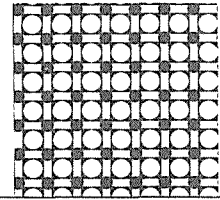


日本 石油連盟, 88년도 石油産業관련



稅制改正 건의내용



— 대한석유협회 기획부 —

이 자료는 日本 石油連盟이 지난 10월 9일 自民黨政務調査會 稅制調査會에 제출한 「88년도 稅制改正要望事項」을 번역한 것이다.(편집자 주)

I. 石油諸稅

1. 石油諸稅의 增稅·撤廢·輕減等

日本경제에 있어서 1차에너지供給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의 코스트低減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석유에는 輸入단계에서 原油에 부과되고 있는 關稅, 石油稅를 필두로 휘발유, 경유, LPG등의 제품에 각각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들 石油諸稅는 연간 3조204억엔(87년도 예산 약15,000엔/kl=약16달러/배럴)에 달하고 있어, 석유산업에 과중한 부담을 강요할 뿐만아니라, 日本경제의 에너지코스트부담의 輕減을 저해하고 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

石油諸稅는 國稅收入의 5.7%(87년도 예산)에 달하고, 間接稅收의 약20%를 차지하여 최고의 稅收가 되고 있다. 더구나 그 用途는 거의가 道路整備(82.3%), 石炭對策(4.2%)등 石油對策이외로 되어 있고, 石油對策에는 불과 10% 정도밖에 배정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石油對策의 절반이상이 國家安全保障을 위한 石油國家備蓄對策費로

되어 있다.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의 안정공급과 코스트의 低減이 에너지政策의 기본적 命題로 되어있는 오늘날, 이에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石油諸稅의 撤廢, 輕減등의 조치가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에 對한 稅는 각에너지間의 동일한 조건(equal footing)이라는 原則에 입각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石油代替에너지로의 轉授·導入을 위한 財源을 석유에서 찾는 것과 같은 不公平한 稅制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더우기 에너지코스트의 低減에 역행하는 石油稅, 加稅等 石油諸稅의 增稅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절대로 반대한다.

(1) 石油稅의 增稅반대·輕減

石油稅는 지난 78년 6월 석유비축등을 중심으로 한 石油對策財源으로서 創設되었다. 그후의 原油가격상승에 따라 從價稅인 石油稅는 대폭적인 稅收增大로 이어졌으며, 그 용도도 석유와 經濟關係에 있는 石油代替에너지對策에 까지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84년도의 稅制改正에서는 석유업계를 필두로 산업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石炭·石油 및 石油代替에너지對策特別會計」의 財源부족을 이유로 石油稅의 稅率이 인상되었다(3.5%→4.7%).

작년이후 原油가격의 하락과 円高로 石油稅收가 대폭

감소하여, 石特會計의 歲入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 歲入부족에 대해서는 ① 철저한 歲出削減을 도모하고, 아울러 ②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石油國家備蓄對策費, 석유대체에너지對策費등을 일반財源으로부터 전용하는 등 石特會計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石油稅의 稅率을 인상, 石特會計의 歲出규모의 유지를 도모하는데는 절대 반대이다.

또한 에너지間的 동일한 조건(equal footing)의 原則이라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稅率을 경감해야 할 것이다.

(2) 가솔린稅 (揮發油稅 및 地方道路稅), 輕油去來稅의 경감 및 石油가스稅, 航空機燃料稅의 增稅반대·경감.

휘발유稅에 대해서는 1944년 4월부터, 輕油去來稅에 대해서는 1956년 6월부터 도로정비의 特定財源으로 제정되었으며, 兩稅모두 현재 日本도로정비사업의 主要財源으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稅收(87년도 예산)은 휘발유稅가 연간 약 2조200억円, 輕油去來稅가 연간 약 5,940억円등 거액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정비사업이 日本국민경제의 基幹社會資本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財源은 石油課稅등의 特定財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一般財源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石油業界로서는 石油諸稅 전체의 실태에 대하여 본격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이것이 撤廢·輕減되는 것을 요청하지만, 휘발유稅·輕油去來稅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기회에 88년 3월말로 暫定措置가 만료되는 暫定分에 대해 이를 폐지하여 基本稅率로 환원하는 등 兩稅의 경감을 강력히 요망한다. 또한 石油가스稅, 航空機燃料稅에 대해서도 增稅반대는 물론이고, 오히려 경감을 요망한다.

(3) 原油關稅의 철폐

原油關稅는 석탄에서 석유로 연료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제성이 뛰어난 석유에 關稅를 부담시킴으로써 석유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석탄수요의 격감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1955년 8월 창설되었으나, 그후 1970년 4월에는 그 稅收가 임시적·잠정적 조치로서 주로 국내석탄산업대책의 財源으로 충당하게 되었으며, 이후 거듭된 暫定增稅로 延長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原油關稅는 西歐주요국에는 例가 없고, 또한 關稅率審議會의 回信에서도 「에너지원인 原油에 대해서는 關稅가 기본적으로는 無稅인 것이 요망되며, 더우기 關稅를 안이하게 特定財源으로 고정해서는 안된다」고 재삼 지적되었다. 석유위기를 계기로 그때까지는 逆으로 석유에서 값싼 輸入炭을 중심으로 한 석유대체에너지로 연료전환이 진척되어 석유수요가 감퇴하는 가운데, 현재 석유산업은 구조 개선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 도저히 他산업에 支援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석탄에 대한 助成財源을 原油關稅에 의존하는 것과 같은 에너지間的 不公平稅制의 시정과 함께 原油關稅의 조기철폐를 추진하고자 한다.

II. 國稅

1. 法人稅 關係

(1) 公害防止관계설비에 대한 特別償却制度의 적용기한연장

현재 汚水處理用設備, 매연처리설비, 질소산화물억제설비, 산업폐기물처리용역설비에 대해서는 初年度에 22%의 特別償却이 인정되고 있다.

석유회사는 이들 설비를 건설하여 국가의 정책요청에 협조하여 왔으나, 향후에도 환경규제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들 설비의 건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本制度의 적용기한 연장을 바라고 있다.

(2) 海外投資등 損失準備金制度의 적용기한 연장

현재 資源탐사·개발단계에 있는 法人의 株式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액의 일정비율(현재 探查法人 100%, 關稅法人 40%)을 海外投資等損失準備金으로서 적립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향후의 에너지안정공급확보를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石油探查·開發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으로, 本制度의 적용기한연장을 바라고 있다.

(3) 에너지 社會經濟기반 투자촉진제의 창설

향후 중장기적인 經濟構造調整의 진척에 따른 석유제품수요의 지속적인 輕質化에 대응하여 石油資源利用基盤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民生用을 중심으로 한 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利用高度化설비의 건설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利用高度化設備의 건설에는 거대한 자금이 소요됨과 동시에, 運轉코스트가 대폭 증가하게 되어 企業經營을 압박하는 큰 요인이 된다.

石油資源利用基盤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향후 석유정제 2次設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할 것이므로, 이들 設備의 건설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의 「에너지基盤 高度化設備 投資促進稅制」 대신에 「에너지社會經濟基盤 投資促進稅制」(취득가액의 7% 稅額공제 또는 初年度 30%의 特別償却)의 창설이 꼭 필요하다.

또한 新稅制에 있어서는 석유자원이용 고도화설비에 대상설비에 포함하고, 알킬레이션장치, 수소화분해장치, 流動接觸분해장치, 殘油流動接觸분해장치, 接觸脫蠟장치를 대상장치로 포함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4) 省에너지關係설비에 대한 특별상각제도의 적용기한연장

현재 熱교환기, 廢壓力회수장치, 蒸氣드렌회수장치, 貯油탱크保温壁등 省에너지관계설비에 대해서는 初年度 14%의 特別償却이 인정되고 있다.

石油會社는 이들 설비를 건설하여 省에너지대책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향후에도 省에너지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 설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本制度의 적용기한 연장을 바라고 있다.

(5) 석유공급안정화 投資促進稅制의 창설

현재 석유정제·元賣企業은 석유제품의 안정공급확보를 위하여 原油調達能力을 강화하여야 하며, 석유의 탐사·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나 석유의 탐사·개발은 막대한 자금과 긴 리드 타임(lead time)을 요하는 위험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收益이 불안정하고 低水準인 석유정제·元賣企業의 진출은 어려움이 있다.

최근의 円高는 해외鑛區의 권익을 취득하여 석유소비大國, 經濟大國으로서의 국제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석유정제·元賣企業의 體質 및 原油調達能力을 강화하여, 향후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生産油田취득을 위한 투자(出資를 포함)액의 7%를 法人稅額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는 「石油供給安定化 投資促進稅

制」의 창설을 바란다.

(6) 民活法¹⁾ 關聯稅制의 확충 및 적용기한연장

民活프로젝트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써 지역의 큰 기대를 받고 있으나, 지방의 民活프로젝트에 대한 민간出資는 매력이 없어 그 사업의 추진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정유공장·貯油所등의 철거지역을 이용하는 등의 民活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一助를 하기 위하여 다음 措置의 강구를 바란다.

① 「民間사업자의 능력활용에 의한 特定施設의 정비촉진에 관한 臨時措置法」에 근거하여 인정을 받은 특정시설整備事業法人에 출자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출자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所得控除를 인정한다.

② 特別償却制度(初年度 20%의 특별상각)에 대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民間사업자의 능력활용에 따라 整備되는 특정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요건(면적, 자금, 규모 등)을 완화함과 아울러 적용기간을 연장한다.

2. 間接稅關係

(1) 石油化學용 국내생산 나프타에 대한 石油稅의 면세조치 창설

石油化學용 수입나프타는 石油稅가 면세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原油를 처리하여 생산되는 國產나프타에 대해서는 原油단계에서 石油稅가 부과되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조치이므로 국내생산 나프타에 대한 石油稅를 納稅義務者인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免稅조치의 창설을 바란다.

3. 關稅關係

(1) 中間溜分 석유제품등의 增産에 관한 관세환급제도의 환급액인상 적용기한연장

현재 中間溜分增産설비를 사용하여 등유·경유등을 생산하는 경우, 이들이 부담하고 있는 原油關稅등의 일부에 대해서는 석유정제업자가 환급을 받고 있다.

原油의 重質化와 석유제품수요의 輕質化에 대응하여 향후에도 中間溜分을 안정공급하기 위해서는 中間溜分

註1: 民活法은 「民間事業者의 능력활용에 의한 特定施設의 整備촉진에 관한 臨時措置法」의 약어임.

增産설비의 건설, 기존설비의 改造·운전조건의 변경등에 소요되는 코스트의 低減을 더욱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의 환급액을 原油關稅부담상당액의 전액까지 인상함과 아울러 本制度의 적용기한연장을 바란다.

(2) 重油의 關稅할당제도의 적용기한연장

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현행 重油關稅할당제도에 따라 국내공급이 곤란한 低硫黃重油를 필요량 수입하고 있으므로 本制度의 적용기간연장을 바란다.

(2) LPG저장시설에 대한 固定資産稅의 경감조치의 적용기한연장

LPG비축은 긴급시에 대비 국가의 安全保障이라는 관점에서 石油備蓄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LPG會社は 국가적 요청에 부응하여 비축노력을 계속해야 하므로 本輕減조치(3년간 1/4경감)의 적용기한연장을 바란다.

2. 기 타

(1) 民活法關聯稅制의 확충 및 적용기한연장

民間活力活用을 더욱 추진하기 위해 「民間사업자의 능력활동에 의한 特定施設의 정비촉진에 관한 臨時措置法」에 관련된 다음의 非課稅조치 및 경감조치에 대하여 적용대상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요건(면적, 자금규모 등)을 완화함과 아울러 적용기한연장을 바란다.

① 同法에 근거하여 認定사업자가 취득한 일정의 不動産에 관한 「不動産取得稅」의 경감조치(1/2경감).

② 同法에 근거하여 認定사업자가 整備하는 일정의 시설 및 토지에 관한 「固定資産稅」의 경감조치(5년간 1/2경감).

③ 同法에 근거하여 認定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관한 「特別土地保有稅」의 非課稅조치.

④ 同法에 근거하여 認定사업자가 신축 또는 증축한 일정의 사업소용 건물에 관한 「事業所稅」의 非課稅조치 및 課稅標準의 경감조치(5년간, 1/2경감). ☑

Ⅲ. 地方稅

1. 固定資産稅關係

(1) 公害防止관계설비에 대한 固定資産稅의 非課稅 및 경감조치의 적용기한연장

汚水·廢液처리설비, 煤煙처리시설, 질소산화물발생抑制 연소개선설비,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固定資産稅의 非課稅조치, 악취배출방지설비에 대해서는 固定資産稅의 5/6경감조치, 소음방지시설 및 高煙突에 대해서는 固定資産稅 2/3경감조치가 인정되고 있다.

석유회사는 국가의 요청에 응하여 지역주민의 환경개선에 노력, 생산성의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들 공해방지설비를 건설하였으며, 향후에도 건설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本制度의 적용기한연장을 바란다.

